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60 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전종덕·정혜경·김 윤

용혜인 · 송옥주 · 이수진

송재봉 · 윤종오 · 박정현

한창민 · 김종민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산림조합법」,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도록 하고,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·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,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·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.

이에,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

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  |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  |
| 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| 자) ①                |
|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자・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・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 략)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|
| 5. 第53條(公務員 등의 立候補) | 5.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|
|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    |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|
| 당하는 者(제5호의 경우에는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6. ~ 9. (생 략)       | 6. ~ 9. (현행과 같음)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